

직제규정(3-2-1)

최종개정일 : 2017.08.24.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및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는 교육법, 사립학교법, 기타 법령 및 정관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직원 등을 둔다.

1.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7.26)
2. 직원은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3. 제1호의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 석좌교수, 대우교수, 강의전문교수,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 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 직원은 대학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며, 연구원은 연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조교는 교육·연구·행정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③ 교직원의 정원은 정관에 따른다.

2장. 총장·부총장

제5조(총장 등)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괄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② 본 대학교에 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특정목적을 담당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1.9.22., 2013.3.1.,2017.1.11.)

③ 부총장은 교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대외협력부총장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부총장이 하고 부총장이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대외협력부총장, 학사운영처장, 기획조정실장, 학사지원처장 순으로 한다.(개정 2007.3.5)(개정 2011.9.22.)(개정 2012.9.1)(개정 2013.1.1.)(개정 2013.3.1)(개정 2017.1.11)

④ 총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두며 대외협력부총장 직속으로 대외협력실(발전기금팀, 홍보팀, 신문방송국)을 둔다.(신설 2012.1.1.)(개정 2014.2.1., 2014.8.1., 2015.4.1., 2015.9.2., 2016.3.1.)

제6조(비서실) 비서실에 비서팀을 두며, 총장과 부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9.17, 2009.7.1, 2011.6.1, 2012.4.1, 2012.9.1., 2014.2.1., 2015.7.9., 2016.3.1.)

3장. 행정기구

1절. 교육운영실(신설 2016.3.1.)

제7조(학사운영처 논산) 학사운영처 논산에 학사운영팀(학사, 장학), 교직부, 교육력강화센터, MOOC센터를 둔다. (개정 2006.9.6., 2007.3.5., 2007.9.17., 2009.7.1., 2010.3.1., 2010.9.1., 2010.11.1., 2011.3.1., 2011.3.21., 2012.1.1., 2012.4.1., 2012.9.1., 2012.12.1., 2013.1.1., 2013.8.1., 2014.4.17., 2014.8.1., 2015.5.1., 2015.7.1., 2015.9.1., 2015.9.2., 2015.10.1., 2016.3.1., 2016.3.23., 2017.1.11., 2017.4.24., 2017.8.24.)

제7조의 2((학사운영처 대전) 학사운영처 대전에 학사운영팀, 고등교육평가연구팀, 인성관, 보건진료소를 둔다. (신설 2017.1.11.)(개정 2017.4.24.)

제7조의 3(학생처)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양성평등센터, 인성관, 보건진료소를 둔다. (신설 2017.8.24.)

제8조 삭제(2017.4.24.)

제9조(평생교육대학) ① 평생교육대학에 평생교육팀을 둔다.(개정 2009.7.1., 2010.11.1., 2014.8.1., 2015.5.1.)

② 평생교육대학내에 건양집나지움을 둔다.(신설 2011.9.22)

제10조(명곡도서관) 명곡도서관(논산), 명곡도서관(대전)을 둔다. (개정 2009.7.1., 2014.2.1., 2014.8.1.)

2절. 교육지원실(신설 2016.3.1.)

제11조(기획처) 기획처에 전략기획팀, 평가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7.3.5, 2007.9.17, 2009.7.1, 2010.9.1, 2010. 11.1, 2011.3.1, 2011.9.22, 2012.9.1., 2013.8.1., 2015.4.15., 2015.5.1., 2015.7.1., 2017.8.24.)

제11조의 2(인사처) 인사처에 인사팀을 둔다.(개정 2017. 8. 24.)

제12조(창의인재처) 창의인재처에 입학팀, 입학사정관실, 창의인재개발원을 두며, 창의인재개발원 내 비교과총괄센터를 둔다.(개정 2009.7.1., 2011.6.1., 2012.1.1., 2012.4.1., 2013.4.1., 2014.8.1., 2014.9.1., 2015.2.26., 2015.5.1., 2016.3.1.)

제13조(학사지원처) 학사지원처에 총무팀 논산, 총무팀 대전, 경리팀, 시설팀 논산, 시설팀 대전, 출판부, 건양문화콘서트홀, 학생수련관을 둔다.(개정 2009.7.1, 2010.9.1, 2011.3.1, 2012.9.1., 2013.5.1., 2014.8.1., 2015.10.8., 2015.11.9., 2016.3.1., 2016.7.21.)

제14조(산학취업본부) ① 산학취업본부에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09.7.1., 2011.3.1., 2012.2.15., 2012.8.1., 2014.2.1., 2014.9.1., 2015.5.1., 2016.3.1.)

②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7.1., 2011.3.1., 2012.2.15., 2012.8.1., 2014.2.1.)

제15조(정보통신원) 정보통신원에 정보통신팀을 둔다.(개정 2010.11.1., 2013.2.1., 2015.5.1.)

제16조(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개정 2010.11.1., 2015.5.1., 2017.8.24.)

3절. 학생군사교육단 등(신설 2016.3.1.)

제17조(학생군사교육단) ① 병역법 제57조 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7.1.)

제18조(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를 둔다.(신설 2015.9.2.)

제19조(학교기업) 학교기업에 한나래기업을 둔다. (개정 2009.7.1., 2010.11.26.)

제20조(직위 및 보직) ① 행정기구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② 행정기구에 부처(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③ 행정기구에 팀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09.7.1)

4장. 단과대학(통합개정 2014.8.1.)

제21조(단과대학 구성) ①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 재향복지교육대학, 세무경영대학, 군사경찰대학, PRIME창의융합대학 및 대학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양교육대학을 둔다.(개정 2015.4.15., 2016.6.1.)

② 대전 메디컬캠퍼스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의료공과대학을 둔다.

③ 단과대학 별 학부(과) 편제는 학칙을 따른다.

④ 기초교양교육대학에 RC센터를 두며, PRIME창의융합대학에 교양교육 전담 리버럴아츠학부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인재개발센터를 둔다.(개정 2016.9.12.)

제21조의 2(단과대학 운영) ① 단과대학에 학장과 그 밑에 필요한 부를 두며, 학부(과)에는 학부(과)장과 그 밑에 필요한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단과대학에는 학부(과)를 둘 수 있으며, 학장과 학부(과)장, 각 부장 및 책임교수는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 ③ 학장과 각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과 학부(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④ 단과대학별로 업무를 총괄할 행정실(팀)을 두며, 행정실(팀)장은 직원 중에서 보한다.

5장. 대학원

제22조(대학원장)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10.3.1)

- ② 대학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3.1)
-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과 학부(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0.3.1)
- ④ 각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 교학팀을 두며, 교학총괄팀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0.3.1)
- ⑤ (삭제) (삭제 2009.7.1)

6장. 부설연구소 및 센터(개정 2016.3.1.)

제23조(부설연구소 및 센터) ① 대학교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예학교육연구원, 명곡의 과학연구소,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창의력개발연구소, 명곡안연구소, 공학교육혁신센터, 군사과학연구소, 평생교육정책연구소, 세종미래비전연구원,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미래융합기술연구원, 국방경찰행정연구소, 박범신문학 콘텐츠연구소, 가상병원, 양성평등센터를 두며, 센터장 및 연구소(원)의 장은 조교수 이상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9.6., 2007.3.5., 2009.7.1., 2010.3.1., 2012.12.1., 2013.1.1., 2013.4.1., 2013.8.1., 2014.4.28., 2014.8.1., 2015.8.27., 2015.9.1., 2015.10.1.)

- ② 연구소(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연구소(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7장. 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신설 2012. 10. 12)(개정 2014.8.1.)

제24조(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 (개정 2014.8.1.)

- ① 중장기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이하 통합본부)를 설치한다.
 1.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단(ACE사업단)
 2.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단(CK-1사업단)
 3.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사업단)
 4.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단(고교교육정상화사업단)
 5.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단
 6.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단(PRIME사업단)
- ② 통합본부의 조직 및 구성, 임무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하며, 통합본부장은 교무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 ③ 통합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사업단의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통합본부는 사업단 내에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4일부터 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인재선발본부), 제23조(단과대학 구성)제2항 의료공과대학 대전 이전은 2015년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규정에 따른 장, 절, 조 변경은 다음과 같다.
 - 장 변경 : 7장(부설연구소 및 센터) → 6장, 8장(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 → 7장
 - 절 신설 : 3장 1절(교육운영실), 2절(교육지원실)
 - 조 변경 : 비서실(제16조→제6조), 평생교육대학(제13조→제9조), 명곡도서관(제17조→제10조), 기획조정실(제6조→제11조), 입학·취업지원처(제10조→제12조), 총무처(제11조→제13조), 산학취업본부(제12조→제14조), 국제교육원(제14조→제16조), 학생군사교육단(제19조→제17조), 예비군연대(제20조→제18조), 학교기업(제21조→제19조), 직위 및 보직(제22조→제20조), 단과대학 구성(제23조→제21조), 단과대학 운영(제23조의 2→제21조의 2), 대학원장(제24조→제22조), 부설연구소 및 센터(제26조→제23조), 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제27조→제24조)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